

의안번호	2213097
의 퇴 인	이용선의원
회 답 일	2025.10.24.
추계번호	25D5162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2항제4호(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)	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 대상자 중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하향 규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2항제4호(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하향 규정(안 제10조제2항제4호)

- 개정안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출 경우 국내 영주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1조의2¹⁾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

1) 「국적법」 제11조의2(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)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[이하 "복수국적자"(複數國籍者)라 한다]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.

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국민으로 처우를 하여야 하므로 선거권 및 투표권, 사회복지(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기초생활보장) 혜택의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제 국적회복을 받는 사람의 수, 국적회복을 받은 사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의 해당 여부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